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6. 7. 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기구 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6. 7. 3.
- 회부일 : 2026. 7. 6. (의안번호 : 26 - 66)

2. 제안이유

- 민선9기 구정비전인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안) 총괄 및 세부내역

- 행정기구 개편(안)

구 분	구분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	정 원
현 행	8국 2담당관 37과 158팀	1소 4과 18팀	1사무국 5팀	16동 50팀	1,479명
개편 후	7국 2담당관 37과 158팀	1소 4과 18팀	1사무국 5팀	16동 50팀	1,479명
증 감	△1국	-	-	-	-

○ 주요 국·부서 개편(안)

- (국 폐지) 환경녹지국 폐지
- (부서 신설) 청년정책과, 통합돌봄과
- (부서 통합) 새마포담당관+예산정책과 → 기획예산과
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① **부구청장 직속: 2담당관 8팀 → 2담당관 7팀 (△1팀)**

- 부서통합: 새마포담당관 + 예산정책과 = 기획예산과 (현 예산정책과)
- 홍보미디어과 국 이동 및 명칭 변경
 - (국 간 이동) 행정지원국 → 부구청장 직속
 - (명칭 변경) 홍보미디어과 → 홍보담당관

〈 현 행 〉		〈 개 정 안 〉	
새 마 포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홍 보 담 당 관 (국 간이동, 명칭변경)	감 사 담 당 관
4팀	4팀	3팀	4팀
새 마 포 기 획	청 령 감 사	언 론	청 령 감 사
새 로 운 마 포	조 사	홍 보	조 사
더 좋 은 마 포	민 원 순 찰	미 디 어	민 원 순 찰
법 무	계 약 심 사		계 약 심 사

② **행정지원국: 5과 20팀 → 6과 25팀 (+1과 +5팀)**

- 국 명칭 변경: 행정지원국 → 행정관리국
- 국 간 부서 이동
 - (스마트정책과) 재정관리국 → 행정관리국(현 행정지원국)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환경녹지국 → 행정관리국(현 행정지원국)

- 부서 통합: 깨끗한마포과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 부서 간 팀 이동
 - (자원봉사팀) 실뿌리복지과 → 자치행정과
- 팀 통합
 - 자원순환팀 + 재활용관리팀 = 자원재활용팀
 - 지역청결팀 + 음식물관리팀 = 지역청결팀
- 팀 명칭 변경
 - (인사혁신팀) → 인사팀, (시설장비팀) → 청소시설팀

〈 현 행 〉

○ 행정지원국

행 정 지 원 과	자 치 행 정 과	홍보미디어과	구 민 안 전 과	민 원 여 권 과
5팀	3팀	3팀	5팀	4팀
총 인 교 육 청 정 사 혁 후 생 사 관 리 책	동 행 정 자 치 협 력 동 청 사 관 리	언 홍 미 디 어	안 전 기 획 재 난 관 리 중 대 재 해 예 방 민 방 위 영 상 정 보	민 원 행 정 민 원 처 리 가 족 관 계 등 록 여 권

〈 개 정 안 〉

○ 행정관리국(국 명칭 변경)

총 무 과 (명칭변경)	자치행정과	구민안전과	청소행정과 (국간동명변경)	민원여권과	스마트정책과 (국 간 이동)
5팀	4팀	5팀	4팀	4팀	3팀
총 무 인 사 (명칭변경) 교 육 후 생 청 사 관 리 책	동 행 정 자 치 협 력 동 청 사 관 리 자 원 봉 사 (부서이동)	안 전 기 획 재 난 관 리 중 대 재 해 예 방 민 방 위 영 상 정 보	청 소 행 정 자 원 재 활 용 (팀 통 합) 지 역 청 결 (팀 통 합) 청 소 시 설 (명칭변경)	민 원 행 정 민 원 처 리 가 족 관 계 등 록 여 권	디 지 털 정 책 전 산 운 영 정 보 통 신

3 재정관리국: 6과 23팀 → 5과 20팀 (△1과 △3팀)

- 국 명칭 변경: 재정관리국 → 기획재정국
- 국 간 부서 이동

- (스마트정책과) 재정관리국 → 행정관리국(현 행정지원국)
- 부서 명칭 변경: 예산정책과 → 기획예산과
- 부서 간 업무 조정
 - (새마포담당관 업무) 기획예산과로 이관
 - (민간투자사업 업무) 예산정책과 → 도시계획과
- 팀 개편
 - 통합: 계약팀 + 입찰팀 = 계약팀

〈 현 행 〉

○ 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	재 무 과	징 수 과	재 산 세 과	지방소득세과
3팀	3팀	4팀	5팀	4팀	4팀
예산재원관리 경영통계	디지털정책 전산운영 정보통신	입계지 찰약출 재산관리	세입총괄 38세금징수 1 38세금징수 2 세외징수 교통체납	재산세1 재산세2 법인표과	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주민세 자동차세



〈 개 정 안 〉

○ 기획재정국(국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 (명칭 변경)	재 무 과	징 수 과	재 산 세 과	지방소득세과
4팀	3팀	5팀	4팀	4팀
기획 (부서 이동) 예산 법무 (부서 이동) 경영통계	재산관리 계약 (팀 통합) 지출	세입총괄 38세금징수1 38세금징수2 세외징수 교통체납	재산세1 재산세2 법인표과	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주민세 자동차세

4] **관광경제국: 4과 15팀 → 6과 21팀 (+2과 +6팀)**

- 국 명칭 변경: 관광경제국 → 문화경제국
- 국 간 부서 이동
 - (체육진흥과) 교육체육국 → 문화경제국(현 관광경제국)
- 부서 신설: 청년정책과 신설 (고용협력과 청년지원팀을 부서 단위로 개편)
- 부서 명칭 변경: 경제진흥과 → 지역경제과
- 부서 간 팀 이동
 - (생활경제팀) 고용협력과 → 지역경제과(현 경제진흥과)
 - (스마트농업팀) 경제진흥과 → 공원녹지과
- 부서 간 업무 이동
 - (창업복지관, 마포비즈니스센터 등 업무) 경제진흥과 → 고용협력과
- 팀 개편
 - (신설) 고용협력과 사회적연대경제팀, 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 청년 외 창업 지원
 - (통합) 마포순환열차팀 + 레드로드발전소팀 = 관광시설팀
 - (분리) 시장활성화팀 → 시장경영팀, 시장시설팀
 - (명칭변경) 동물정책팀 → 동물보호팀

< 현 행 >

○ 관광경제국

관 광 정 책 과	경 제 진 흥 과	문 화 예 술 과	고 용 협 력 과
4팀	4팀	3팀	4팀
관 광 정 책 관 광 사 업 마 포 순 환 열 차 레 드 로 드 발 전 소	경 제 총 괄 시 장 활 성 화 동 물 정 책 스 마 트 농 업	문 화 예 술 기 획 문 화 시 설 문 화 사 업	고 용 정 책 고 용 사 업 청 년 지 원 생 활 경 제

〈 개 정 안 〉

○ 문화경제국(국 명칭 변경)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명칭변경)	문화예술과	고용협력과	청년정책과 (부서 신설)	체육진흥과 (국간이동)
3팀	5팀	3팀	4팀	3팀	3팀
관 광 정 책 관 광 사 업 관 광 시 설 (팀 통 합)	경 제 총 괄 시 장 경 영 시 장 시 설 (팀 분 리) 동 물 보 호 (명칭변경) 생 활 경 제 (부서이동)	문 화 예 술 기 획 문 화 시 설 문 화 사 업	고 용 정 책 고 용 사 업 사 회 적 연 대 경 제 (팀 신 설) 창 업 지 원 (팀 신 설)	청 년 정 책 청 년 장 업 청 년 지 원	체 육 정 책 생 활 체 육 체 육 시 설

5] 교육체육국: 4과 13팀 → 4과 15팀(+2팀)

○ 국 명칭 변경: 교육체육국 → 미래교육국

○ 국 간 부서 이동

- (체육진흥과) 교육체육국 → 문화경제국(현 관광경제국)
- (가족정책과) 복지동행국 → 미래교육국(현 교육체육국)

〈 현 행 〉

○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3팀	4팀	3팀	3팀
교 육 정 책 교 육 시 설 청 소 년 지 원	평 생 교 육 도 서 관 정 책 도 서 관 운 영 소 금 나 루 분 관	보 육 정 책 공 공 보 육 민 간 보 육	체 육 정 책 생 활 체 육 체 육 시 설



〈 개 정 안 〉

○ 미래교육국(국 명칭 변경)

교 육 청 소 년 과	평 생 학 습 과	보 육 정 책 과	가 족 정 책 과 (국 간 이 동)
3팀	4팀	3팀	5팀
교 육 정 책 교 육 시 설 청 소 년 지 원	평 생 교 육 도 서 관 정 책 도 서 관 운 영 소 금 나 루 분 관	보 육 정 책 공 공 보 육 민 간 보 육	가 족 정 책 아 동 정 책 아 동 지 원 드 림 스 타 트

⑥ 복지동행국: 5과 22팀 → 5과 19팀 (△3팀)

- 국 명칭 변경: 복지동행국 → 복지국
- 국 간 부서 이동
 - (가족정책과) 복지동행국 → 미래교육국(현 교육체육국)
- 부서 신설: 통합돌봄과 신설 (복지정책과 돌봄통합팀을 부서 단위로 개편)
 - (팀구성)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마음돌봄팀
- 부서 명칭 변경
 - (실뿌리복지과) →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 어르신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과
- 부서 간 팀 이동
 - (자원봉사팀) 실뿌리복지과 → 자치행정과
- 팀 개편
 - (신설) 1인가구돌봄팀, 마음돌봄팀(자살예방 기획팀)
 - ※ 복지국: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 보건소: 위기개입, 상담, 치료 등
 - (명칭변경) 실뿌리복지팀 → 생활보장팀, 어르신돌봄팀 → 어르신재가복지팀

〈 현 행 〉

○ 복지동행국

복 지 정 책 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 족 정 책 과
5팀	5팀	4팀	3팀	5팀
복 지 기 획 돌 봄 통 합 복 지 자 원 지 역 복 지 주 거 복 지	실 뿌 리 복 지 기 초 보 장 자 원 봉 사 통 합 조 사 1 통 합 조 사 2	어 르 신 정 책 어 르 신 시 설 어 르 신 지 원 어 르 신 돌 봄	장 애 인 정 책 장 애 인 시 설 장 애 인 지 원	가 족 정 책 아 동 정 책 가 족 지 원 아 동 보 호 드 림 스 타 트



〈 개 정 안 〉

○ 복지국(국 명칭 변경)

복 지 정 책 과	생 활 보 장 과 (명 칭 변 경)	통 합 돌 봄 과 (부 서 신 설)	어르신정책과 (명 칭 변 경)	장애인정책과 (명 칭 변 경)
4팀	4팀	4팀	4팀	3팀
복 지 기 획 복 지 자 원 지 역 복 지 주 거 복 지	생 활 보 장 (명 칭 변 경) 기 초 보 장 통 합 조 사 1 통 합 조 사 2	돌 봄 정 책 돌 봄 지 원 (팀 이 동) 1인가구돌봄 마 음 돌 봄 (팀 신 설)	어 르 신 정 책 어 르 신 시 설 어 르 신 지 원 어르신재가복지 (명 칭 변 경)	장 애 인 정 책 장 애 인 시 설 장 애 인 지 원

7 도시관리국: 4과 20팀 → 6과 29팀 (+2과 +9팀)

○ 국 명칭 변경: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 국 간 부서 이동

-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국 → 도시환경국(현 도시관리국)

○ 부서 명칭 변경

- (주택상생과) → 주택과, (건축지원과) → 건축과, (맑은환경과) → 환경과

○ 부서 간 팀 및 업무 이동

- (팀 이동) 스마트농업팀: 경제진흥과 → 공원녹지과

- (팀 이동) 임대사업팀: 주택상생과 → 부동산정보과
- (업무 이동) 민간투자사업 업무: 예산정책과 → 도시계획과

○ 팀 개편

- (통합) 환경정책팀 + 기피시설관리팀 → 환경행정팀
- (분리) 공원팀 → 공원기획팀, 생활공원팀
- (명칭변경) 공동주택지원팀 → 공동주택팀

재개발지원팀 → 재개발팀

재건축지원팀 → 재건축팀, 보상주택팀 → 주택사업팀

대기질관리팀 → 대기관리팀

〈 현 행 〉

○ 도시관리국

주 택 상 생 과	도 시 계 획 과	건 축 지 원 과	부 동 산 정 보 과
5팀	4팀	6팀	5팀
공 동 주 택 지 원 재 개 발 지 원 재 건 축 지 원 임 대 사 업 보 상 주 택	도 시 계 획 도 시 관 리 도 시 개 발 역 세 권 개 발	건 축 계 획 건 축 지 도 건 축 운 영 공 공 건 축 건 축 안 전 센 터 건 축 물 정 비	부 동 산 행 정 지 적 관 리 지 가 조 사 부 동 산 거 래 관 리 도 로 명 주 소



〈 개 정 안 〉

○ 도시환경국(국 명칭 변경)

주 택 과 (명칭변경)	도시계획과	건 축 과 (명칭변경)	환 경 과 (국간통합명칭변경)	공원녹지과 (국 간 이동)	부동산정보과
4팀	4팀	6팀	4팀	5팀	6팀
공 동 주 택 (명칭변경) 재 개 발 (명칭변경) 재 건 축 (명칭변경) 주 택 사 업 (명칭변경)	도 시 계 획 도 시 관 리 도 시 개 발 역세권개발	건 축 계 획 건 축 지 도 건 축 운 영 공 공 건 축 건축안전센터 건축물정비	환 경 행 정 (팀 통 합) 환 경 지 도 대 기 관 리 (명칭변경) 에너지관리	공 원 기 획 (공원팀 분리) 가 로 정 원 생 활 공 원 (공원팀 분리) 자 연 생 태 녹 색 여 가	부동산행정 지 적 관 리 지 가 조 사 부동산거래관리 도로명주소 임 대 사 업 (부서이동)

8 교통건설국: 5과 22팀 → 5과 22팀 (변동없음)

○ 부서 명칭 변경

- (주차관리과) → 교통지도과, (보행행정과) → 건설관리과
(도로개선과) → 도로과, (물관리과) → 치수과

○ 팀 명칭 변경

- (운수질서관리팀) → 운수관리팀, (보행행정팀) → 건설행정팀
(보상건설팀) → 건설보상팀

< 현 행 >

○ 교통건설국

교 통 행 정 과	주 차 관 리 과	보 행 행 정 과	도 로 개 선 과	물 관 리 과
5팀	4팀	4팀	5팀	4팀
교 통 관 리 주 차 장 조 성 자 동 차 등 록 자 동 차 정 비 교 통 개 선	주 차 단 속 주 차 장 관 리 주 차 세 입 운수질서관리	보 행 행 정 보 상 건 설 가 로 정 비 광 고 물	도 로 계 획 도 로 관 리 보 도 관 리 지하안전굴착 도 로 조 명	하 치 기 하 수 수 전 천



< 개 정 안 >

○ 교통건설국

교 통 행 정 과	교 통 지 도 과 (명 칭 변경)	건 설 관 리 과 (명 칭 변경)	도 로 과 (명 칭 변경)	치 수 과 (명 칭 변경)
5팀	4팀	4팀	5팀	4팀
교 통 관 리 주 차 장 조 성 자 동 차 등 록 자 동 차 정 비 교 통 개 선	주 차 단 속 주 차 장 관 리 주 차 세 입 운 수 관 리 (명 칭 변경)	건 설 행 정 (명 칭 변경) 건 설 보 상 (명 칭 변경) 가 로 정 비 광 고 물	도 로 계 획 도 로 관 리 보 도 관 리 지하안전굴착 도 로 조 명	하 치 기 하 수 수 전 천

9 보건소: 4과 18팀 → 4과 18팀 (변동없음)

○ 부서 및 팀 개편

- (부서 명칭 변경) 건강동행과 → 건강증진과
- (부서간 업무 조정) 자살예방업무: 건강증진과 → 통합돌봄과
- (팀 명칭 변경) 햇빛센터모자보건팀 → 모자보건팀

〈 현 행 〉

○ 보건소

보 건 행 정 과	위 생 과	건 강 동 행 과	의 약 과
4팀	4팀	5팀	5팀
보 건 기 획 감 염 병 관 리 방 역 대 응 정 신 건 강	식 품 행 정 식 품 안 전 위 생 관 리 공 중 위 생	햇 빛 센 터 모 자 보 건 강 증 진 방 문 보 건 건 강 돌 봄 예 방 접 종	의 약 무 약 검 무 만 성 질 환 진 건 강 생 활 관 리 원



〈 개 정 안 〉

○ 보건소

보 건 행 정 과	위 생 과	건 강 증 진 과 (명 칭 변 경)	의 약 과
4팀	4팀	5팀	5팀
보 건 기 획 감 염 병 관 리 방 역 대 응 정 신 건 강	식 품 행 정 식 품 안 전 위 생 관 리 공 중 위 생	건 강 증 진 방 문 보 건 모 자 보 건 (명 칭 변 경) 건 강 돌 봄 예 방 접 종	의 약 무 약 검 무 만 성 질 환 진 건 강 생 활 관 리 원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 입법예고 ; 2026. 7. 1. ~ 7. 2.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기구 조직개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9기 구정 비전인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 청년 지원체계 강화, 통합돌봄 및 1인 가구 돌봄 기능 강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고,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합과 부서 간 기능 재배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개정내용

■ 본 조례안의 조직 개편 개편 방향

- 부서 간 유사 기능 통합·재편성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유사·중복 업무 통합을 통한 1개국 축소
 -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 운영되던 조직을 일원화
- AI 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 행정 구현
 - AI 기반 행정비서 ‘마포 브레인’ 구축 및 산하기관 AI 기반 운영체계 구축
 - AI 기반 보건소 통합돌봄 구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행정 강화
 - 65세 이상 노인가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 해 드림센터’ 설치

- 통합돌봄 사업 선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통합돌봄과’ 설치
-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 ‘마음 돌봄 팀’ 신설
- 청년의 성장·자립 지원 정책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청년지원 행정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신설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확대 및 마포구 뉴패러다임 펀드 추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 조례안은 민선 9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재조정을 시행하고, 기존 8국 2 담당관 37과 158팀에서 7국 2 담당관 37과 158팀으로 변경하고 1개국 축소 개편, 6국 명칭 변경, 구간부서 이동 8과 5팀, 부서 개편 신설 2 개, 통합 4 개, 명칭 변경 15개, 팀 개편 신설 7개, 분리 2 개, 통합 10개, 폐지 4 개, 부구청장 직속 2 담당관 8팀에서 2 담당관 7팀 1개 팀 축소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국, 과, 팀 명칭 변경은 전반적으로 구민이 볼 때 알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8국에서 7국으로 축소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조직담당부서는 의견도 수렴하여 불편함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원순환과, 깨끗한마포과를 통합해서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구민이 볼 때 알기 쉬운 과로 변경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행정관리국 소관국에서 관리한다는 점과 주거 환경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를 행정관리국으로 이전한 것은 단체장이 깨끗한 마포와 구민들의 일상의 불편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됨.

- 청년정책과와 통합돌봄과 신설은 청년지원 확대와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 인력 재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조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것으로 위반 사항이 없는 것 사료됨.
- 민선 9기 행정기구 개편 일부개정안, 자체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점과 제2항에 국이나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 팀 단위의 명칭은 집행부 정책의 행정 방향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지만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서 명칭이나 팀의 이름이 수시로 변경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이기 때문에 신중한 명칭 변경이 요구되며, 구민이 알기 쉬운 보편적 용어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정기구 개편 후 사후 조치가 늦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청사 주변 안내표시, 공사 현장 표기 등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

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

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